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15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급속히 진행되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증진 유도와 공공의료비 절감 및 사회체육을 활성화하고자 도시공원 내 축구장 등 운동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점용료 및 사용료 중 운동시설에 한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50퍼센트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따른 신청서 제출과 증명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6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

역시의회의회장(참조 :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5, 팩스 032-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제2호 “제17조제8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17조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다만, 제17조제6호는 운동 시설에 한한다.”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공원시설 사용 시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제17조제8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공원시설을 사용하 는 경우. <u><단서신설></u> 3. (생략) <u><신설></u>	제18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 17조제6호 및 제8호부터 ----- -----. <u>다만, 제17조제6호는 운동시설에</u> <u>한한다.</u>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u>점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미</u> <u>리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시</u> <u>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료를</u> <u>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공원시설 사</u> <u>용시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u>

관련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관련자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입장료 등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원시설을 설치한 도시공원에 한정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입장료 및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공원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수탁관리자가 이를 정한다.

③ 제2항 단서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입장료를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점용료의 징수)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65세 이상 노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시공원 내 축구장 등 운동시설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감면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되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임.

3. 작성자

- 문화복지위원회 이용범 의원